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69 발의연월일: 2024. 7. 26.

발 의 자:정점식·박형수·김미애

정희용 • 박덕흠 • 구자근

고동진 · 강선영 · 김태호

장동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, 특별회계를 통하여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,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교통이 열악한 도 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부재함에 따라 도서 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0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중 "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"을 "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)	제20조(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	
지역, 특수상황지역, 농산어촌	
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, 특성에	
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	
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, 주민	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
소득창출 기반의 확충, 향토	등 기반시설의 확충
자원의 개발·활용, 도시환경의	
개선과 교육・의료・복지의 증진	
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	
한다.	,